

실태조사	2015-11-10
보안등급	일반과제

GIE
Issue
Brief

경기도 기숙사 운영학교 학생인권 신장 방안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위정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
 유영란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윤정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
 진숙경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
 조형대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원



※ 이 보고서는 연구자의 전문적 시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본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GIE Issue Brief ①

발행인 이한복 발행일 2015년 11월 09일 발행처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 기숙사 운영학교 학생인권 신장 방안

1 연구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

- 학교 기숙사는 학생들의 주거공간이자 교육공간의 통합체임. 따라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의 주된 책무 중 하나는 기숙사 입사생들의 ‘삶의 질’(생활의 질과 교육의 질) 제고임
 - 따라서 학교차원에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삶과 학업의 균형(Life- Study Balance)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특히 기숙사 운영의 전제(前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교육적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임
 - 공동생활을 통해 자아조절 능력과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 함양
 - 다양한 인간적 교감을 통해 경험과 지식의 습득
 - 학습동기 고양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
 -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민주적 삶의 형식 체득
 -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교양 함양

- 그러나 최근 일각에서는 학교 기숙사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 제기되는 주된 문제는 1) 기숙사 운영의 비민주성, 2) 학생인권 제한의 불합리성, 3) 과도한 입시지향성임.
 - 2015년 4월 3일 광주광역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 기숙사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숙사는 학생인권의 치외법권 시대’로 지적한 바가 있음.

- 경기도교육청 정책 방향중 하나는 ‘학교민주주의의 심화’임. 따라서 학교 기숙사의 민주적 운영을 통해 학생인권을 신장하고, 기숙사생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이런 맥락에서 기숙사생의 인권보장 정도를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분석 자료로는 <2015년 기숙사 운영학교 점검결과>(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과 자료), <기숙사 학생인권 실태 조사 설문 결과>(연구진 자체 설계 및 분석자료), <기숙사 운영 규정 분석 자료>(연구팀 분석)를 활용함.

2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 기숙사 운영 현황

1 학교급별, 설립별 운영 현황

- 총 134개교가 기숙사를 운영 중임. 학교별 분포를 보면, 중학교 4개교(3%), 고등학교 118개교(88%), 특수학교 8개교(6%), 각종학교와 고등공민학교를 포함하는 기타학교가 4개교(3%)임. 이를 도내 전체 학교 수와 비교하면, 중학교는 0.7%, 고등학교는 26.2%, 특수학교와 기타학교는 각각 25.0%의 비율로 기숙사를 운영함. 그리고 학교설립의 비율로 살펴보면, 공립이 58개교로 43.3%를 차지하고 사립이 76개교로 56.7% 임.

<표 1> 경기도 내 기숙사 운영학교 수 현황(학교급별, 설립별)

구분		학교수(개교)	기숙사 운영학교 내 비율(%)	도내 학교 수 대비 비율 (%)	도내 학교수(개교)
학교 급별	중학교	4	3.0	0.7	604
	고등학교	118	88.0	26.2	451
	특수학교	8	6.0	25.0	32
	기타학교 ¹⁾	4	3.0	25.0	16
설립 별	공립	58	43.3		
	사립	76	56.7		
계		134	100.0		

1) 각종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포함.

2 학생 정원 및 현원 현황, 입실현황

- 경기도 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수는 총 23,906명으로(남학생 10,777명, 여학생 13,129명) 경기도내 중·고·특수·기타학교 전체 재학생 900,578명 대비 2.7% 차지. 기숙사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91.6%(<표2> 참조).

<표 2> 경기도 내 기숙사 운영학교 정원 및 현원 현황(학교급별)

학교급	기숙사 정원			기숙사 현원			1실 평균 학생수(명)
	남학생	여학생	소계	남학생	여학생	소계	
중학교	247	335	582	236	291	527	2.9
고등학교	11,843	12,855	24,698	10,531	12,487	23,018	5.9
특수학교	200	162	162	106	57	163	6.3
기타학교 ¹⁾	224	224	224	104	94	198	4.0
계	12,514	13,576	26,090	10,977 (87.7%)	12,929 (95.2%)	23,906 (91.6%)	5.8

1) 각종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포함.

- 1실 평균 인원은 중학생은 2.9명, 고등학교는 5.9명, 특수학교는 6.3명, 기타학교는 4.0명으로 나타남. 그러나 고등학교의 경우 편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남학생의 경우 광명진선고가 40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6명 이상인 경우는 안산동산고(14명), 평택 은혜고(12명), 용인태성고(9.7명), 광주중앙고(8.6명), 여주고(8명), 평택 한광고(8명), 효명고(6.5명)의 순으로 나타남. 여학생의 경우에도 광명진선고가 40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6명 이상인 경우는 김포 양곡고(8명), 안산 원곡고(8명), 여주고(8명), 경화여고(6.7명), 송탄제일고(6.5명), 평택 효명고(6.5명)의 순으로 나타남

3 기숙사 사감직 운영 현황

- 도내 기숙사 운영 학교의 경우 기숙사 관리를 맡는 전담 사감과 함께 사감의 역할을 지원하는 겸직교사를 두고 있음. 고등학교 중에서 사감이 없는 학교는 총 9개교로, 수원자혜학교 외에는 모두 고등학교임. 공립으로는 수원농생명과학고, 여주자영농고, 이천제일고가 있으며, 사립으로는 신흥고, 유신고, 가온고, 다산고, 진위고가 이에 해당됨. 사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51.1명으로 고등학교(54.5명), 중학교(47.9명), 기타학교(28.3명), 특수학교(5.8명)의 순으로 나타남(<3> 참조).

<표 3> 경기도 내 기숙사 인원 대비 사감 겸직교사 및 사감 현황(학교급별)

(단위: 명)

학교급	기숙사 현원			겸직교사		사감		사감 1인당 학생 수
	남학생	여학생	소계	남	여	남	여	
중학교	236	291	527	0.5 ²⁾	0.5	6.5	4.5	47.9
고등학교	10,531	12,487	23,018	92.5	51.5	185.5	236.5	54.5
특수학교	106	57	163	1	4	9	19	5.8
기타학교 ¹⁾	104	94	198	2	1	3	4	28.3
계	10,977	12,929	23,906	96	57	204	264	51.1

1) 각종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포함.

2) 소숫점은 중고등학교 기숙사가 함께 운영되는 경우

- 남학생이 있는데 남성 사감이 없거나 여학생이 있는데 여성 사감이 없는 경우도 있음. 특수학교와 기타학교를 제외한 고등학교 남학생 기숙사에서 남성 사감이 없는 경우가 38개교이고, 반대의 경우도(여학생 기숙사 여성사감 부재) 14개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표 4> 참조).

<표 4> 경기도 내 기숙사 인원 대비 사감 겸직교사 및 사감 현황(학교급별)

학교급	학교 수 (개교)		
	기숙사 숙식 남학생이 있는데 남성 사감이 없음	기숙사 숙식 여학생이 있는데 여성 사감이 없음	사감교사가 없음
중학교	-	-	-
고등학교	38	14	8
특수학교	3	1	1
기타학교 ¹⁾	1	-	-
계	42	15	9

1) 각종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포함.

4 학교급별 기숙사 퇴사 사유 현황

- 도내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학생들의 퇴사사유별 인원 현황을 분석해 보면, 개인사정이 67.7%(2,683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13.1%(521명), 규정위반 10.1%(402명), 전학 6.6%(262), 경제사정 2.1%(82명), 시설불편 0.4%(14명)의 순으로 나타남(<표 5> 참조).

<표 5> 경기도 내 기숙사 퇴사사유별 인원(학교급별)

구분	퇴사사유별 인원(비율)						소계
	규정위반	전학	경제사정	시설불편	개인사정	기타 ²⁾	
중학교	-	44	-	-	2	0	46
고등학교	395	203	81	14	2,654	518	3,865
특수학교	-	1	1	-	1	2	5
기타학교 ¹⁾	7	14	-	-	26	1	48
소계	402 (10.1%)	262 (6.6%)	82 (2.1%)	14 (0.4%)	2,683 (67.7%)	521 (13.1%)	3,964 (100%)

1) 각종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포함.

2) 자퇴, 유학 등

5 학교급별 기숙사 연한 및 운영 규정 현황

- 도내 기숙사 시설 중 가장 오래된 곳이 1973년도에 설치된 자혜학교(특수학교)이며, 명현학교(특수학교, 1977년), 홀트학교(특수학교, 1984년) 시설도 건축된 지 30년이상이 되는 것을 나타남. 특수학교 기숙사 연한은 평균 21.6년, 기타학교 16.3년, 중학교 9.8년 고등학교가 8.5년으로 전체 건물 평균 연령은 9.6년임(<표 6> 참조).

<표 6> 경기도 내 기숙사 연령 및 회의 운영 현황(학교급별)

학교급	기숙사 건물 연령 (년)	기숙사 관련 회의가 없는 학교 수 (개교)		
		운영위원회 ×	자치위원회 ×	의견수렴 절차×
중학교	9.8	1	1	0
고등학교	8.5	5	15	10
특수학교	21.6	0	8	5
기타학교 ¹⁾	16.3	1	1	1
계	9.6	7	25	16

1) 각종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포함.

- 도내 모든 학교 기숙사는 운영 규정을 갖추고 있고, 기숙사 운영 관련 기구로는 <운영위원회>, <자치위원회>를 두고 있음. 대부분 운영위원회를 연 1회 이상 하고 있지만, 일부 학교들은 <운영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없음(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5개교, 기타학교 1개교). 그리고 특수학교를 제외하고 자치위원회가 없는 학교가 17개교이며, 11개교는 기숙사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3 기숙사 입사생 인권실태 설문 분석

1 설문 응답자 특성

- 경기도내 기숙사 운영 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2015년 10.19일(월)부터 10월 23일(금)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함. 분석에 포함된 사례수는 총 3,278명으로 중학교가 75명으로 2.3%, 일반계고 63.42%, 대안특성화고 2.99%, 전문계특성화고 16.6%, 특수목적고가 12.3%를 차지함. 설립유형은 국공립 학교 학생이 54.3%, 사립 학교 학생이 45.7%를 차지하며, 도시와 읍면지역은 각각 50.8%와 49.2%를 차지함.

<표 7> 응답자 및 응답학교 특성

		사례수	비율
전체		3278	100%
성별	남성	1,623	49.51
	여성	1,655	50.49
학교유형	중학교	75	2.29
	일반계고	2,079	63.42
	대안특성화고 (대안고)	98	2.99
	전문계특성화고	544	16.6
	특수목적고 (특목고)	404	12.32
	각종학교	78	2.38
설립유형	국공립	1,781	54.33
	사립	1,497	45.67
지역규모	도시	1,664	50.76
	읍면	1,614	49.24
기숙사 사감 교사 유무와 형태	전문 사감교사(고용직)	2,657	81.06
	학교 교사 겸직	600	18.3
	없음	21	0.64

2 학교 인권 실태

- [학생인권 보장 정도] 재학 학교에서 학생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평균 3.07점(4점 척도)으로 대부분 '대체로 잘 보장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학교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전문계고 <일반계고 < 특목고 순으로 인권이 잘 보장되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또한 사립학교보다는 국공립학교, 농촌지역 학교보다는 도시지역 학교에서 인권보장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됨.

<표 8> 학교 학생인권의 전반적 보장 정도

전체 (평균)	학교유형						F	설립유형			지역규모		
	중	일반 계고	대안 고	전문 계고	특목 고	각종 학교		국공 립	사립	t	도시	읍면	t
3.07	3.15	3.06	3.14	2.92	3.19	3.36	10.14*** 각종학교=특목고> 일반계고> 문계고	3.10	3.02	3.31* **	3.13	3.00	4.98* **

- **[학교에서 학생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이유]** 학교에서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23.9%의 학생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나 장치 미흡’이라 응답했고, 다음이 ‘많은 학생수로 인한 통제상의 어려움’(19.3%), ‘학생들의 인권의식 부족’(17.3%) 이라 응답함. 학교유형별로 차이를 보면,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의식 부족’, 전문계고와 특목고에서는 ‘인권침해적 내용을 포함한 학교규칙’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선택함.

<표 9> 학교에서 인권보장이 되지 않는 이유

	중학교	일반계고	대안고	전문계고	특목고	각종학교	전체
학생수가 많아서 선생님들이 통제하기 힘들어서	15 (20.00%)	428 (20.59%)	17 (17.35%)	94 (17.28%)	72 (17.82%)	7 (8.97%)	633 (19.31%)
학생들의 인권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나 장치 미흡	14 (18.67%)	509 (24.48%)	13 (13.27%)	130 (23.90%)	102 (25.25%)	15 (19.23%)	783 (23.89%)
학교 규칙 자체가 인권침해적인 내용 포함	9 (12.00%)	325 (15.63%)	11 (11.22%)	104 (19.12%)	86 (21.29%)	4 (5.13%)	539 (16.44%)
선생님들이 인권의식 부족	3 (4.00%)	258 (12.41%)	12 (12.24%)	69 (12.68%)	37 (9.16%)	1 (1.28%)	380 (11.59%)
학생들의 인권의식 부족	26 (34.67%)	346 (16.64%)	33 (33.67%)	97 (17.83%)	53 (13.12%)	11 (14.10%)	566 (17.27%)
기타	8 (10.67%)	213 (10.25%)	12 (12.24%)	50 (9.19%)	54 (13.37%)	40 (51.28%)	377 (11.50%)
Total	75 (100%)	2,079 (100%)	98 (100%)	544 (100%)	404 (100%)	78 (100%)	3,278 (100%)

- **[항목별 학교내 학생인권 보장 정도]** 항목별로 볼 때,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두발·복장에 대한 자유권, 학교운영 참여권, 사생활권 등에 대해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설문조사 결과, ‘자신의 두발, 복장 등을 선택할 권리’ 2.87점, ‘학교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 2.94점, ‘성적이나 개인적인 사정 등 사적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3.01점으로 낮게 응답함.

-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전문계고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며, 일반계고가 그 다음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대부분의 항목에서 각종학교와 대안교육 특성학교등학교, 그리고 중학교가 높은 점수를 보임. 특히, 특목고 학생들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적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학교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교육활동 선택 권리’에 있어서 일반고보다 인권이 더 잘 보장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일반고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전문계고보다는 상황이 나았지만,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적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학교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에 있어서는 전문계고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학교 학생이 사립학교 학생들보다 인권이 더 잘 보장된다고 인

식하고 있었고, 지역별로는 도시 지역 학생이 여타지역 학생들에 비해 인권 보장 수준이 더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0> 항목별 학교내 학생인권 보장 정도

내용	전체 (평균)	학교유형						설립유형			지역규모			
		중	일반계고	대안고	전문계고	특목고	각종학교	F	국공립	사립	t	도시	읍면	t
출신·성별·종교·학력·연령·지역·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3.29	3.34	3.27	3.34	3.18	3.44	3.58	7.58*** 특목고>일반계고 특목고=각종학교>전문계고	3.33	3.23	4.01***	3.33	3.24	3.53***
자신의 두발, 복장 등을 선택할 권리	2.87	3.25	2.90	3.00	2.64	2.92	3.00	11.24*** 중=일반계고=대안고= 특목고>전문계고	2.92	2.82	3.08**	2.94	2.81	4.17***
성적이나 개인적인 사정 등 사적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3.01	3.31	2.96	3.27	2.91	3.22	3.45	13.94*** 중=대안고=특목고=각종학교>일반계고=전문계고	3.06	2.94	4.02***	3.06	2.95	3.57***
자신의 삶과 관련된 학교의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	2.94	3.30	2.88	3.26	2.95	3.08	3.24	10.03*** 중=대안고=특목고>일반계고	3.00	2.87	4.37***	2.99	2.89	3.37***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	3.09	3.36	3.07	3.28	2.98	3.22	3.34	8.06*** 중=대안고=특목고>전문계고 특목고>일반계고	3.12	3.05	2.61**	3.14	3.04	3.51***
학교의 자치활동에 자유롭게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3.11	3.43	3.11	3.33	2.98	3.18	3.21	7.86*** 중>일반계고 일반계고=특목고=대안학교>전문계고	3.11	3.11	0.20	3.15	3.07	2.78**
자유 의사에 따라 모임(동아리 등)을 만들고 활동할 권리	3.26	3.46	3.29	3.28	3.07	3.31	3.42	9.66*** 중=일반계고=특목고>전문계고	3.24	3.29	-1.8	3.31	3.22	3.33***
사생활 침해(소지품 검사, 몸수색)를 받지 않을 권리	3.10	3.15	3.18	2.94	2.82	3.08	3.18	16.42*** 일반계고=특목고>전문계고	3.17	3.02	4.74***	3.12	3.08	1.38
물리적 폭력과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3.23	3.30	3.24	3.24	3.08	3.39	3.45	9.17*** 특목고>일반계고>전문계고	3.26	3.21	1.73	3.28	3.19	3.42***
합리적인 절차와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권리	3.17	3.36	3.17	3.31	3.03	3.25	3.42	7.47*** 중=일반계고=대안고= 특목고>전문계고	3.18	3.15	1.27	3.20	3.14	2.15*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에 관해 선택할 수 있는 권리	3.07	3.30	3.02	3.26	3.02	3.27	3.39	9.50*** 특목고>일반계고=전문계고	3.10	3.03	2.24*	3.10	3.04	1.94
학교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3.29	3.45	3.30	3.33	3.11	3.40	3.50	11.44*** 중=일반계고=특목고= 각종학교>전문계고	3.28	3.30	-0.74	3.33	3.24	3.62***

*** : p<.001, ** : p<.01, * : p<.05

3 기숙사 인권 실태

- [기숙사 인권침해 경험] 기숙사 인권침해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의 12.5%가 침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함. 학교유형별로는 중학교 학생의 경험(4.5%)이 평균 비율보다 낮고, 특목고 학생은 평균 비율보다 약간 높은 것(15.4%)으로 나타

남. 특목고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교내 학생 인권보장이 잘 된다고 인식하는 것과는 상반된 결과로 주목할 필요가 있음.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 학생이 인권침해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11> 기숙사 인권침해 경험

	예	아니오	전체	χ^2
전체	12.5%	87.5%	100.0% (2901명)	
학교유형	중학교	4.5%	95.5% (67명)	7.59
	일반계고	12.0%	88.0% (1866명)	
	대안고	12.8%	87.2% (86명)	
	전문계고	13.4%	86.6% (494명)	
	특목고	15.4%	84.6% (350명)	
	각종학교	10.5%	89.5% (38명)	
설립유형	국공립	11.1%	100.0% (1574명)	5.83*
	사립	14.1%	100.0% (1327명)	
지역규모	도시	11.6%	100.0% (1436명)	2.20
	읍면	13.4%	100.0% (1465명)	

*** : p<.001, ** : p<.01, * : p<.05

□ [항목별 인권침해 경험 및 주요 침해자] 인권침해 경험 중에서는 ‘소지품 검사 등 생활 침해’가 전체 응답의 17.7%로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이 ‘자율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기회 제한’(13.4%), ‘방과후 기숙사 접근의 과도한 제한’(12.7%), ‘일방적인 징계절차에 의한 처벌’(12.4%), ‘두발이나 복장에 대한 표현 제한’(11.1%), ‘욕이거나 모욕적 언사 등의 언어 폭력’(10.6%) 순으로 나타남. 다른 항목의 경우에는 전체 경험의 10% 이하로 상대적으로 침해 발생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침해자로는 전반적으로 사감교사가 52.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이 교사(32%), 학생(10.2%) 순으로 나타남. 대부분의 항목이 유사한 양상이지만, ‘체벌 등의 신체적 학대’, ‘성적 공개 등 개인정보 유출’, ‘출신·성별·지역·성적 등에 의한 차별’의 경우는 교사가 더 주요한 침해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남. ‘따돌림이나 괴롭힘’은 학생에 의해 침해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전문계고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표 12> 항목별 인권침해 경험 및 주요 가해자

	인권침해 경험		주요 가해자				사례수
	사례수	비율	사감교사	교사	학생	기타	
자율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기회 제한	137	13.4%	53.8%	30.1%	9.1%	7.0%	143
체벌 등의 신체적 학대	39	3.8%	25.9%	58.6%	8.6%	6.9%	58
따돌림(왕따)이나 괴롭힘	16	1.6%	13.3%	16.7%	66.7%	3.3%	30
욕, 모욕적 언사 등 언어 폭력	109	10.6%	42.1%	28.1%	23.7%	6.1%	114
성적 공개 등(집안의 경제적 사정) 개인정보 유출	25	2.4%	28.6%	57.1%	9.5%	4.8%	42
소지품 검사 등 사생활 침해	181	17.7%	69.9%	15.6%	9.2%	5.2%	173
출신, 성별, 지역, 성적 등에 의한 차별	39	3.8%	32.8%	44.8%	13.8%	8.6%	58
두발이나 복장에 대한 표현 제한	114	11.1%	43.0%	47.4%	5.9%	3.7%	135
모임을 만들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제한	40	3.9%	52.5%	42.4%	1.7%	3.4%	59
일반적인 징계절차에 의한 처벌(벌점 부여)	127	12.4%	75.6%	19.1%	0.8%	4.6%	131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14	1.4%	54.2%	16.7%	20.8%	8.3%	24
방과후 기숙사 접근의 과도한 제한	130	12.7%	59.5%	32.5%	2.4%	5.6%	126
기타	54	5.3%	-	-	-	-	-
전체	1025	100.0%	52.3%	32.0%	10.2%	5.5%	1093(100%)

□ [항목별 기숙사내 학생인권 보장 정도] 항목별 기숙사내 학생인권 보장 정도를 살펴 보면, 대부분 3점 이상으로 인권보장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여가 등 개인 생활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권리’(2.92), ‘충분한 수면을 취할 권리’(2.93), ‘기숙사 운영에 대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권리’(2.94), ‘기숙사 정책 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2.95)는 상대적으로 그 보장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됨.

- 학교유형별로 보면, 기숙사 인권보장 정도는 일반계고·전문계고 <특목고 <각종학교·대안학교 순으로 나타남. 특히 일부 항목에 있어서 일반계고가 전문계고 보다 낮게 나타남. 예컨대,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는 일반계고가 가장 낮은 점수임이 확인됨. 이는 일반계고에 차별이 심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임. 그리고 ‘기숙사 퇴사를 결정할 권리’ 항목에 대해서는 특목고에서 상대적으로 침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이 응답에는 모든 학생을 강제적으로 입사하게 하는 학교 방침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학교유형별로 보면, ‘모임을 만들고 활동할 권리’,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합리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권리’, ‘기숙사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제외하고는, 국·공립학교 학생들이 사립학교 학생들보다 인권보장 잘 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적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적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권리’ 등에서는 도시지역 학생들이 읍면지역 학생들보다 인권보장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인식

하는 반면에, 기숙사 퇴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읍면지역 학생들이 더 잘 보장 되는 것으로 인식함

<표 13> 항목별 기숙사내 학생인권 보장 정도

내용	전체 (평균)	학교유형						설립유형			지역규모			
		중	일반고	대안고	전문계고	특목고	각종학교	F	국공립	사립	t	도시	읍면	t
성별이나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3.07	3.38	2.97	3.27	3.13	3.36	3.51	20.50*** 특목고>전문계고>일반계고 중=대안고=각종학교>일반계고	3.18	2.93	8.32***	3.15	2.99	4.9***
성적이나 개인적인 사정 등 사적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3.14	3.42	3.08	3.23	3.15	3.36	3.54	13.44*** 중=특목고=각종학교>일반계고 특목고>전문계고	3.22	3.05	6.38***	3.19	3.10	3.2**
기숙사 정책 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	2.95	3.38	2.89	3.22	3.00	3.03	3.32	9.08*** 중=대안고>일반계고	3.04	2.85	5.71***	2.97	2.94	0.82
기숙사 운영에 대해 문제 제기 할 수 있는 권리	2.94	3.35	2.88	3.26	2.96	3.08	3.38	10.74*** 중=대안고=특목고=각종학교>일반계고 중>전문계고	3.03	2.85	5.38***	2.96	2.93	1.20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3.14	3.38	3.11	3.24	3.08	3.26	3.62	8.07*** 특목고=각종학교>일반계고=전문계고	3.19	3.08	3.83***	3.16	3.12	1.73
기숙사 자치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3.09	3.36	3.08	3.23	3.03	3.14	3.38	4.37*** 중>전문계고	3.12	3.06	2.05*	3.10	3.08	0.80
자유 의사에 따라 기숙사 내 모임(동아리 등)을 만들고 활동할 권리	3.05	3.38	3.04	3.26	3.01	2.99	3.38	5.23*** 중>전문계고=특목고	3.04	3.06	-0.54	3.07	3.03	1.06
사생활 침해(소지품 검사, 몸수색)를 받지 않을 권리	3.03	3.14	3.08	3.06	2.87	2.97	3.30	5.98*** 일반계고>전문계고	3.07	2.99	2.58**	3.03	3.03	-21
물리적 폭력과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3.26	3.30	3.26	3.24	3.12	3.38	3.65	8.61*** 각종학교>일반계고=특목고>전문계고	3.27	3.23	1.55	3.29	3.22	2.9**
합리적인 절차와 규정에 의하여 처벌(벌점 및 권리 제한) 받을 권리	3.14	3.35	3.12	3.28	3.10	3.16	3.51	3.92** 각종학교>일반계고=전문계고	3.16	3.12	1.42	3.16	3.12	1.51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	3.08	3.41	3.03	3.33	3.05	3.24	3.43	9.71*** 중=특목고>전문계고 중=특목고=대안고>일반계고	3.14	3.01	4.14***	3.08	3.08	0.20
기숙사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3.30	3.35	3.32	3.31	3.15	3.37	3.68	8.80*** 각종학교=특목고=일반계고>전문계고	3.30	3.30	-0.24	3.31	3.29	0.86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권리	2.93	3.26	2.88	3.14	2.92	3.04	3.38	6.67*** 각종학교=중>일반계고	2.99	2.86	4.01***	2.99	2.87	3.5***
여가 등 개인생활에 대해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2.92	3.38	2.88	3.20	2.91	2.99	3.24	7.59*** 중>일반계고=전문계고	2.98	2.85	3.98***	2.93	2.91	0.56
기숙사 퇴사를 자기 판단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	3.03	3.30	3.09	3.10	2.88	2.80	3.32	12.2*** 중=일반계고=각종학교>특목고 중=일반계고>전문계고	3.07	2.97	3.02**	3.00	3.06	-1.9*

*** : p<.001, ** : p<.01, * : p<.05

□ [기숙사에서 인권보장이 되지 않는 이유] 기숙사에서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이유로 는 전체적으로 ‘학생이 기숙사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가 21.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이 ‘입시성적을 강조하는 학교당국의 기숙사 운영방침 때문에’(18.9%), ‘학생인권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나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 에’(15.8%), ‘학생들의 인권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16.7%) 순으로 나타남.

- 학교유형에 따라서 응답 차이가 나타남. 중학교 학생들은 ‘학생들의 인권의식이 부족 하기 때문에’(39.4%), 일반계고는 ‘입시성적을 강조하는 학교당국의 기숙사 운영방 침 때문에’(24.4%), 전문계고는 ‘학생인권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나 장치가 부족하 기 때문에’(22.9%), 특목고는 ‘학생이 기숙사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 기 때문에’(23.7%)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음.

<표 14> 기숙사에서 인권보장이 되지 않는 이유

	중학교	일반계고	대안고	전문계고	특목고	각종학교	전체
입시성적을 강조하는 학교당국의 기숙사 운영방침 때문에	6 (9.09%)	445 (24.41%)	14 (16.28%)	46 (9.41%)	26 (7.51%)	2 (5.41%)	539 (18.93%)
학생이 기숙사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6 (9.09%)	405 (22.22%)	12 (13.95%)	109 (22.29%)	82 (23.70%)	7 (18.92%)	621 (21.81%)
학생인권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나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7 (10.61%)	253 (13.88%)	8 (9.30%)	112 (22.90%)	60 (17.34%)	10 (27.03%)	450 (15.81%)
기숙사 규칙 자체가 인권침해적인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14 (21.21%)	212 (11.63%)	16 (18.60%)	69 (14.11%)	75 (21.68%)	1 (2.70%)	387 (13.59%)
선생님(사감)들의 인권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4 (6.06%)	180 (9.87%)	9 (10.47%)	50 (10.22%)	40 (11.56%)	3 (8.11%)	286 (10.05%)
학생들의 인권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26 (39.39%)	243 (13.33%)	26 (30.23%)	83 (16.97%)	56 (16.18%)	12 (32.43%)	446 (15.67%)
기타	3 (4.55%)	85 (4.66%)	1 (1.16%)	20 (4.09%)	7 (2.02%)	2 (5.41%)	118 (4.14%)
전체	66 (100%)	1,823 (100%)	86 (100%)	489 (100%)	346 (100%)	37 (100%)	2,847 (100%)

□ [교사들의 인권보호 정도] 기숙사 생활 중에 교사들은 학생 인권을 어느 정도 지켜주 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평균 3.69점으로, ‘그저 그렇다’(30.96%)와 ‘잘 지켜주 는 편이다’(44.19%)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전체 학생 중 17.19%는 ‘매우 잘 지켜준다’고 응답해 교사들에 대한 신뢰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학교유형별 로는 중학교와 각종학교 학생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전문계고와 일반계고 학생들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고,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학교 학생들이 사립학교보다 긍 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5> 선생님들의 인권 보호 정도

전체 (평균)	학교유형						F	설립유형			지역규모		
	중	일반 계고	대안 고	전문 계고	특목 고	각종 학교		국공 립	사립	t	도시	읍면	t
3.69	4.00	3.69	3.65	3.58	3.73	4.20	5.31*** 중>각종학교>전문계 고 각종학교>일반계고	3.74	3.63	3.30* **	3.72	3.66	1.90

- [기숙사 학생 자치회 존재 유무] 기숙사 학생 자치회 설치 유무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1.0% 학생들은 자치회가 있는 것 알고 있고,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15.3%,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학생은 23.7%로 나타남. 학교유형별로는 중학교 학생들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중에서는 일반계고와 전문계고 학생들이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음. 반면에 특목고와 대안학교에서는 학생 자치회가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16> 기숙사 학생 자치회 존재 유무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전체	χ^2	
전체	61.0%	15.3%	23.7%	100.0% (2729명)		
학교유형	중학교	47.6%	11.1%	41.3%	100.0% (63명)	42.08***
	일반계고	59.5%	15.4%	25.1%	100.0% (1738명)	
	대안고	67.1%	17.7%	15.3%	100.0% (85명)	
	전문계고	60.8%	14.3%	25.0%	100.0% (469명)	
	특목고	70.8%	14.8%	14.5%	100.0% (339명)	
	각종학교	54.3%	31.4%	14.3%	100.0% (35명)	
설립유형	국공립	71.5%	9.0%	19.5%	100.0% (1494명)	169.56***
	사립	48.3%	22.9%	28.7%	100.0% (1235명)	
지역규모	도시	56.3%	19.9%	23.8%	100.0% (1346명)	46.88***
	읍면	65.6%	10.8%	23.6%	100.0% (1383명)	

*** : p<.001, ** : p<.01, * : p<.05

- [자치회의 학생의견 반영 정도] 학생 자치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기숙사 운영에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평균 3.45점으로 높게 나타남(물론 응답자의 32.84%는 보통으로 응답함), 이 통계치에는 자치회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이 전달되고 있다는 학생들의 믿음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학교유형별로는 중학교가 점수가 가장 높고, 각종학교, 대안고, 일반계고, 특목고, 전문계고 순으로 나타남.

<표 17> 자치회 학생 의견 반영 정도

전체 (평균)	학교유형						F	설립유형			지역규모		
	중	일반 계고	대안 고	전문 계고	특목 고	각종 학교		국공 립	사립	t	도시	읍면	t
3.45	3.91	3.49	3.61	3.18	3.47	3.76	6.33*** 중=일반계고>전문 계고	3.41	3.52	-2.10*	3.48	3.43	1.03

-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학교가 가장 노력해야 할 점] 기숙사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가 가장 노력해야 할 점으로는 전체의 37.52%가 '학생이 기숙사 운영 규정 제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를 선택하였고, 그 다음으로 '입시실적을 강조하는 기숙사 운영 방침의 변화'(17.11%), '학생인권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나 장치 마련'(12.75%)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보면, 중학교에서는 '학생 인권교육 강화'(25.4%)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일반계고는 '기숙사 운영 규정 제정과장 참여', '입시실적을 강조하는 기숙사 운영 방침 변화'를 중요하게 선택함. 반면에, 전문계고와 특목고는 '학생인권 감시제도·장치 마련'을 두 번째로 중요하게 꼽음.

<표 18>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서 학교가 가장 노력해야 할 점

	중학교	일반계고	대안고	전문계고	특목고	각종학교	전체
입시실적을 강조하는 기숙사 운영 방침이 바뀌어야 한다	5 (7.94%)	378 (21.75%)	13 (15.29%)	39 (8.32%)	29 (8.55%)	3 (8.57%)	467 (17.11%)
학생이 기숙사 운영 규정 제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13 (20.63%)	666 (38.32%)	17 (20.00%)	173 (36.89%)	142 (41.89%)	13 (37.14%)	1,024 (37.52%)
학생인권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14 (22.22%)	196 (11.28%)	9 (10.59%)	76 (16.20%)	48 (14.16%)	5 (14.29%)	348 (12.75%)
선생님(사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4 (6.35%)	184 (10.59%)	10 (11.76%)	60 (12.79%)	44 (12.98%)	3 (8.57%)	305 (11.18%)
선생님과의 상담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11 (17.46%)	153 (8.80%)	13 (15.29%)	47 (10.02%)	33 (9.73%)	5 (14.29%)	262 (9.60%)
학생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16 (25.40%)	161 (9.26%)	23 (27.06%)	74 (15.78%)	43 (12.68%)	6 (17.14%)	323 (11.84%)
전체	63 (100%)	1,738 (100%)	85 (100%)	469 (100%)	339 (100%)	35 (100%)	2,729 (100%)

- [학교 기숙사 이미지 인식] 학교 기숙사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34.66%로는 ‘통학의 불편을 덜어주는 의식주 해결하는 곳’, 그 다음으로는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합숙소 같은 곳’(24.04%), ‘가정과 같은 삶의 공간’(17.5%)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중학교와 대안고, 각종학교에서는 ‘가정과 같은 삶의 공간’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에, 일반계고와 특목고, 전문계고에서는 ‘통학의 불편을 덜어주는 의식주 해결하는 곳’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그리고 일반계고에서는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합숙소라는 응답도 두번째로 많았고, 특히 특목고의 경우에 ‘협력과 배려의 가치를 배우는 체험공간’이라는 응답도 상대적으로 많음. 이러한 응답 차이는 학교에서 설정한 기숙사 운영 방침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표 19> 학교 기숙사의 이미지

	중학교	일반계고	대안고	전문계고	특목고	각종학교	전체
가정과 같은 삶의 공간	23 (36.51%)	211 (12.14%)	35 (41.18%)	107 (22.81%)	89 (26.25%)	12 (34.29%)	477 (17.48%)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합숙소	8 (12.70%)	563 (32.39%)	5 (5.88%)	27 (5.76%)	50 (14.75%)	3 (8.57%)	656 (24.04%)
통학의 불편을 덜어주는 의식주 해결하는 곳	7 (11.11%)	599 (34.46%)	17 (20.00%)	211 (44.99%)	102 (30.09%)	10 (28.57%)	946 (34.66%)
학교가 운영하는 기숙형학원 같은 곳	13 (20.63%)	190 (10.93%)	6 (7.06%)	48 (10.23%)	24 (7.08%)	6 (17.14%)	287 (10.52%)
협력과 배려의 가치를 배우는 체험공간	9 (14.29%)	107 (6.16%)	19 (22.35%)	43 (9.17%)	48 (14.16%)	1 (2.86%)	227 (8.32%)
기타	3 (4.76%)	68 (3.91%)	3 (3.53%)	33 (7.04%)	26 (7.67%)	3 (8.57%)	136 (4.98%)
전체	63 (100%)	1,738 (100%)	85 (100%)	469 (100%)	339 (100%)	35 (100%)	2,729 (100%)

4 기숙사 운영 규정 문제점 분석

1 <기숙사운영위원회>의 자의적 구성 문제

- 대개의 기숙사 운영 학교에서는 <기숙사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기숙사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기관 기숙사 운영 지침>을 따라야 함. 동 지침에 따르면 <기숙사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및 학부모대표로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정수는 학교 규모에 따라 7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해야 함. 이 경우 학부모대표 위원이 과반 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함(동 지침 제3조 3항).
-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기숙사운영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지침을 벗어나 자의적으로 구성하는 사례가 확인됨. 우선 <기숙사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교장이 맡도록 되어 있는데(동 지침 제3조 4항), 위원장에 교감을 보임하고 학교장은 참여하지 않는 학교가 확인됨. 그리고 학부모에게 위원장을 보임하는 학교 사례도 확인됨.

· 학부모 위원이 과반수가 안 되는 사례: 양서고(7명중 3명), 안법고(학부모 참여 없음)
정명고(9명중 3명), 경기외고(7명중 학부모 위원 수 미규정), 성남외고(운영위원 정수 불명확함)
· 교장이 불참하고 위원장을 교감으로 선임한 사례: 세마고(운영위 교장 불참), 우성고 등
· 학부모를 운영위 위원장으로 선임한 사례: 진건고(학부모가 위원장, 부위원장)

2 <기숙사운영위원회> 명칭 사용 관련 문제

- 경기도교육청 소속 각급학교가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당해 학교는 반드시 <기숙사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지침 제3조 1항). 그런데 <기숙사운영위원회> 설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운영기구의 명칭을 지침에서 정한 명칭과 무관하게 명명한 학교도 있음.

· 명칭 자의적 명명 사례: 안법고 - 기숙사관리위원회, 장호원고-기숙사관리위원회
고양국제고등학교-기숙사소위원회 등

3 사배자·원거리 통학자 선발기회 제한 문제

- 기숙사 운영학교 중 많은 학교가 입사 자격 요건으로 ‘사배자’ 및 ‘원거리 통학자’를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선발 비율은 매우 제한적으로 배정함. 즉 ‘사배자’ 및 ‘원거리 통학자’ 선발 비율을 축소하고, 이들에 대한 선발 방식 또한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하는 학교들이 다수임.

·사배자 및 원거리 통학자 선발 제한 사례 : 광주중앙고(원거리20%, 사배자 10%, 성적우수자 62%), 백운고(원거리·사배자 10%, 성적우수자 90%) 양평고(사배자 15%, 원거리 10%, 성적우수자 75%)

·사배자 및 원거리 통학자 성적 위주 선발 사례 : 가평고(사배자-성적순 선발), 경기자동차과학고(원거리 통학자 - 성적순) 등

4 성적 위주 선발에 따른 차별 문제

- 대개 기숙사 운영학교의 입사자 선발 기준은 '성적순'임. 신입생의 경우에는 중학교 내신 성적을 주로 하되, 자체 '편성고사' 혹은 '진단평가'를 포함하는 사례도 있음. 그리고 재학생들의 경우에는 내신 성적, 연합학력평가 등을 기준으로 입사자를 선발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리고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최저 성적 기준'을 제시하여 지원 자격을 사전 제한하고 있음.

·입사자 최저성적 기준 적용 학교 사례 : 안성고(성적 상위 25% 이상), 안법고(상위 30%이상), 신한고(전교20% 이내) 등

5 자의적인 입사자 선발권 행사 문제

- 일부 학교의 경우, 학교장, 담임교사, 부장교사 등의 추천에 의해 입사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추천 대상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추천권자의 자의적 판단 여지가 많음. 또 교직원 자녀 희망자에 한해서는 기숙사 입사를 보장하는 학교도 있고, '교육청 및 관련기관 추천'에 의해 입사자를 결정하는 학교도 있음. 이와 같은 규정은 합리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에서 월권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음.

·학교장 추천의 경우 특례 인정 학교 사례: 우성고(학교장 추천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는 규정 명시), 안산고(학교 공헌자의 입사 학교장의 결정)

·교직원 자녀 우선 입사 허용 학교 사례 : 삼괴고(교직원 자녀 희망자 우선 입사)

6 입사자 제한 규정 문제

- 대개 학교에서는 교직원반자(교내봉사 및 사회봉사),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처분자에 대해서는 입사를 제한함. 이처럼 교직원반자의 기숙사 입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이중처벌의 해당한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음.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이미 징계로 책임을 진 상황인데, 이런 과거의 기록을 근거로 기숙사 입사를 배제하는 것은 학교의 과잉 방어로 인한 학생의 권리침해로 볼 수 있음.

6 '성적'에 의한 강제 퇴사 규정 문제

- 일부 학교에서는 기숙사 입사 후 성적이 일정 기준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강제 퇴사하도록 규정에 명시함. 이러한 규정은 학생 생활의 안정성을 해치고, 학생 상호간에 불안을 조장할 소지가 있는 만큼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함.

·성적에 의한 강제 퇴사 규정 사례 : 삼육고(시험성적 하락자), 신성고(성적 현저한 하락자), 신한고(전교성적 25%초과자 퇴사), 안산동산고(전교과 정례교사에서 2등급이하 1차경고, 2차 퇴사)

7 모호한 퇴사 규정 문제

- 일부 학교의 퇴사 규정은 모호하여 자의적 판단 여지를 갖고 있음. 예컨대, '학교명예 실추', '불손한 언행', '무단집회', '이성교제로 면학분위기를 해치는자', '풍기문란' 등으로 규정하여 행위의 범위와 정도가 불분명함. 이는 기숙사 관리의 편의성을 우선 고려하는 포괄규정으로 실제적 적법절차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퇴사규정은 입사자의 일체 이익을 박탈하는 규정인 만큼 구체적이어야 하며, 구체화 할 수 없는 경우의 행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의 퇴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함.

8 기숙사 징계 및 퇴사처분의 일방성 문제

- 많은 학교가 기숙사 자체 징계 제도(징계 및 상벌점제)를 운영하고 있음. 그리고 징계 결과에 따라 강제 퇴사 명하기도 함. 문제는 징계 처분이나 퇴사처분 과정에서 '피징계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임. 즉 소명절차와 불복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입사자의 방어권 보장 규정이 보완되어야 함.

9 기숙사생 학습참여 강제 문제

- 대개 학교에서는 자율학습 혹은 별도 학습프로그램(심화수업 등)을 운영하면서 참여를 강제함(불참시 별점 부여), 일정한 시간이전에는 기숙사 입사를 불허하여 자율학습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들기도 함. 그리고 일부학교에서는 주말 및 방학 중 별도 학습프로그램의 의무 참여를 규정함. 이러한 자율학습 및 여타 학습프로그램 참여를 강제하는 규정은 '자기결정권'의 침해의 소지가 있음. 자기선택권과 결정권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강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함

11 촘촘하게 짜여진 일과표 문제

- 기숙사 입사생의 일상은 빈틈이 없음. 주간엔 학교 정규수업에 참여하고 정규수업 이후에는 기숙사 일과표에 따라 움직여야 함. 대개학교는 석식이후부터 취침(대개 자정이나 그 전후)시간 전까지 자율학습이나 보충심화 수업을 운영함. 이 시간 중에 휴식시간은 간식 시간을 포함에 20-30분에 불과함. 휴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입사생의 수면권과 휴식권의 맥락에서 일과표 구성의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12 학생인권엔 반하는 생활규정 문제

- 대개 학교가 운영하는 기숙사 생활규정 중에는 학생인권엔 반하는 규정들이 있음. 예컨대, 이성교제 금지, 허가받지 않은 인쇄물 부착 금지, 휴대폰 소지금지, 단체(모임)결성 금지, 외출·외박의 과잉 제한, 사물함 수시 점검 규정 등이 이에 해당됨. 이러한 제재 규정은 학생들의 행동의 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당사자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기숙사 출입 통제 및 불시 소지품 검사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면담결과)

학생 1 : 만약에 기숙사 시간 외에 허락 없이 들어갈 때요. 뭘 두고 왔는데 학교 수업시간 중이나 쉬는 시간이나 갈려면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돼서. 엄청 급한 일, 그러니까 막 집에 행사가 있다거나 아니면 누가 상을 당하셨으면 어쩔 수 없이 되는데 그 외에는 아예 안 돼요.

학생 2 : 소지품 검사 같은 때. 가끔 한번 그러거든요. 그런데 원래 그 주머니 같은 거랑 가방 뒤지는 거는 개인 허락 없이 원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해요. 잡으려고.

연구자 : 그러니까 뭔가 일이 벌어져서 소지품 검사를 하는 거예요?

학생 2 :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방한다고. 너무 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걸린 것도 아닌데.

학생 3 : 캐비닛 열어보는 것도 자기 속옷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선생님들이 보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진짜 싫어요.

13 학생자치회 운영의 문제

- 대개 학교의 기숙사 운영 규정에서는 입사생들의 자치조직 구성·운영을 명문화하고 있음(자치조직에 대한 규정이 없는 일부 학교도 있음).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자치회 구성을 사감회의에서 결정하는 사례가 있음. 그리고 자치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학교가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례로 자치회의를 학교장이나 사감의 허락을 득해야 할 수 있거나 자치회의 활동도 사감의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대개의 경우 입사생 자치회의 사감의 보조기구 혹은 단순친목도모 모임으로 그 역할과 기능이 한정되

어 있음.

- 자치조직 규정이 없는 사례 : 경화여고, 고양외고, 동두천외고, 여주고 등
- 사감회의가 자치회를 구성하는 사례: 신흥고(사감이 명예위원회 고문)

▲ 유명무실한 기숙사 학생자치회(면담결과)

학생 1 : 애들이 기숙사 관련 불만사항을 만약에 적어서 가져가잖아요, 회의에! 그러면 너 네가 자치회 임원들이인데 이런 거를 적어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세요. 그냥 저희는 뭐 사감선생님들 원하시는 대로만 자꾸 시키시려고 하는. 점호하고, 그냥 점호하고 그런 용, 그런 필요로만 생각하는 거 같아요. 저희 의견수렴이 안 돼요.

14 퇴사자 납부금 환급 문제

- 기숙사 입사생이 퇴사하는 경우, 선납한 기숙사 운영비를 기일에 맞추어 정산해야 함. 정산 결과 미사용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환불해 주어야 함.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규정에 ‘일체 환불불가’ 명시하여 학생의 재산을 침해하는 경우가 확인됨.

·환불 불가 규정 명시 사례 : 이천 양정고(퇴사시 기숙사비·급식비 환불 금지)

15 호실별 상벌점 부여 문제

- 상벌점제를 시행하는 학교 중에서는 호실별 상벌점 부여 규정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음. 이처럼 책임의 소지를 개인이 아니라 집단에 묻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특히 책임을 집단에 귀속시키는 방식은 집단 간의 경쟁 유도를 통한 통치방식이란 점에서 반교육적이란 지적을 받을 소지도 있음

·호실별 벌점 규정 사례 : 이천양정고(호별 시상제), 장호원고(호실별 점수부여)

16 학생 사생활 보장 관련 문제

- 대개 학교에서는 기숙사내에서의 휴대폰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휴대폰 소지를 불허하고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적발되는 경우 벌점을 부과하거나 자치법정에 제소하기도 함.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기숙사 입소시에 일괄 수거하고 퇴소 시에 되돌려 주는 학교도 있음. 이러한 휴대폰 사용 제한 규정은 과도한 사생활 제한이라 할 수 있음.

-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습 이외의 시간에는 학교에서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가 있음. 이런 취지의 결정은, 휴대폰 사용 제한 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동 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는 것임(사건: 10진정0298600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2010.10.29.) 2015년 3월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숙학교 주중 휴대폰 압수는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학교장에게 휴대전화 사용 제한 규정을 완화하라고 권고한 바가 있음

17 기숙사운영 규정 내용 구성 문제

- 기숙사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체계가 학교마다 상이함. 기숙사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입사생의 자격과 선발 방법, 생활지도 내용, 징계관련 대한 규정 등에 대한 구성이 제 각각임. 이런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기숙사운영규정 표준안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음.

5 기숙사 입사생 인권신장 방안

1 기숙사운영 관련 규정 표준안 개발·보급

- 현재 각급학교 기숙사 운영 관련 규정은 제정 형식이 제 각각임. <기숙사운영규정>과 <기숙사생활규정>(생활수칙)을 각각 분리해서 제정한 학교가 있는가 하면 이 두 규정을 하나로 통합한 학교도 있음. 이런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기숙사운영규정>의 제정 형식 통일안(표준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연구진은 <기숙사운영규정>에 <생활규정>을 포함하는 통합안을 제안하는 입장임)
- <기숙사운영규정>의 내용체계도 학교마다 제 각각이고 내용적 통일성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기숙사 운영 관련 규정 통합안을 개발함에 있어서는 내용체계도 정리할 필요가 있음. 규정 통합안에는 기본적으로 <기숙사운영 목적 및 방침>, <기숙사운영위원회 구성과 기능, 운영>,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입사생의 자격>, <입사생의 선발방법>, <입사 및 퇴사 관련 내용>, <기숙사 생활수칙>, <입사생의 권리와 책임>,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입사생의 방어권 보장>, <규정 개정 요건과 절차 >, <관리직원의 임면, 임무, 보수> 등이 포함되어야 함. 이와 같은 기본 내용에 더하여 단위학교의 특성에 맞는 규정 개정을 권고할 필요가 있음.

<표 20> <기숙사운영규정> 개정 관련 제안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숙사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 위원 참여 보장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기관 기숙사 운영지침> 및 <단위학교 기숙사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학생대표의 위원 참여 보장 필요 2. 사회통합 배려자 및 원거리 통학자 선발 비율 확대
→ 사배자 및 원거리 통학자 비율 전체의 40%이상 권고
→ 예외적인 비율을 책정할 수 밖에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청에 소명 3. 입사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
→ 선발기준의 상세화와 명확화
→ 학교장 추천과 같은 ‘예외조항’ 혹은 ‘특혜의혹’의 시비가 될 만한 규정은 삭제 필요 4. 입사생 선발 기준의 다양화
→ 사배자, 원거리 통학자 성적위주 선발 규정 개정(면접비율확대)
→ 학업성적 중심의 선발 기준의 완화(면접 확대 및 추첨제 적용) 5. 학생자치회의 자치와 자율권 확대
→ 학생자치회 구성의 자치권 보장(학생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구성) |
|--|

- 학생자치회의 예산 편성 조항 신설
- 학생자치회 활동의 차지권 인정(“사감을 보좌하고”, “사감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의 활동”, “사감의 허락을 득 한 후에 회의 개최”등과 같은 제한 규정 삭제)
- 학생자치회의 기획, 실행, 결산 등 운영의 자율권 보장

6. 학생자치회와 학교당국·<기숙사운영위원회>와의 간담회 정례화

- 학생자치회와 학교장 간의 간담회 정례화(분기당 1회) 및 내용 공개
- 학생자치회와 <기숙사운영위원회>와의 정례 간담회(분기당 1회)
(학생대표가 기숙사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생략)

7. 학습 관련 선택권 보장

- 자율학습 및 학습프로그램 선택권 보장
- 학습프로그램 강제 참여 조항 삭제

8. 입소제한 규정 완화(이중처벌의 최소화)

- 학칙 처분자에 대한 입소 제한은 과잉 제한임.
- 따라서 누적 처분자가 아닌 경우에는 입소가 가능하도록 완화해야 함
- 입소 제한자로 규정된 학생들에게도 <기숙사운영위원회>에 입사희망을 요청하는 안건 제출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제안에 대해서는 <기숙사운영위원회>에서 의결

9. 규제의 적법성, 합리성 및 수용성 제고

- 휴대폰 사용 제한 규정 완화(당사자 토론을 통해 조정안 도출 필요)
- 이성교제 금지 조항 폐지(교제는 인정하되, 기숙사내 이성공간의 출입을 금하는 것이 합리적임)

10. 징계의 절차적 적법절차 준수

- 학생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의견 진술권, 재심청구권 규정 신설)

11. 학생자치회의 규정 개정 요구권 및 참여권 부여

- <기숙사운영규정> 중 기숙사 생활수칙이나 <생활규정>에 대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개정 요구권 및 참여권 행사 요건 및 절차 규정 명시

“아이들에게 규칙을 만들라고 하면 정말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한 규칙을 만들어요. 그럴 때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교육전문성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너희들은 왜 징별적인 조치만을 생각하느냐. 교육적으로 계속 소통을 해야죠.” (학생인권옹호관 인터뷰)

12. 기숙사생의 권리 항목 신설

- 입사생에게 어떤 권리가 있고, 학교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13. 학생 간 집단경쟁을 유도하는 규정 삭제

- 호실별 상벌점제 폐지

14. 최소한의 휴식권 보장

- 석식이후 취침시간까지 최소 40분이상 휴식시간 보장

15. 자진퇴사 요건의 간소화

→학생 당사자와 보호자가 퇴사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의 허가 혹은 <기숙사운영위원회>의 의결 과정 생략

2 <기숙사운영위원회>의 법적 지위 강화

- 현재 기숙사 운영과 관련한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기숙사운영위원회> 임. 이 기구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 최고의 권위조직이자 의사결정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기숙사 운영에 대한 학교의 책임성과 공적 운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고양국제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기숙사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기숙사운영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기관 기숙사 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음.

제3조(기숙사운영위원회의 설치)

1. 기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운영교는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안) → 기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운영교는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기숙사 관리교사(사감) 인권교육 강화

- 기숙사에서 학생을 지도하고, 기숙사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교사(사감)의 인권마인드는 중요한 인권환경이 됨. 그의 인권마인드에 따라 학생들과의 관계방식, 규정의 해석 및 집행방식, 학생들의 건의사항 처리 방식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임. 따라서 기숙사 관리교사의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의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 학기당 1회 인권교육 정례화가 필요함. 특히 학기 초 학교장 및 기숙사운영위원 중 학부모 위원에 대한 인권교육도 필요함.

“학교 선생님이란 달리 저희 이제 사감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그런 게 없잖아요. 학교 선생님처럼 자격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뭐 학교든 회사든 그냥 뽑는데 회사에서도 일단 교육을 진행하기는 하는데 회사 차원에서 교육하는 거나 아니면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교육하는 거랑 많이 틀릴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인권도 인권이고 그런데 이제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학생들을 대해야 될지. 뭐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면 좋지 않을까.”(Y사감 인터뷰)

4 기숙사생 인권교육 의무화

- 기숙사생들에게 한학기 1회 이상 인권교육(폭력예방교육 포함)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학생들 간의 인권 침해를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인권교육은 매우 중요함. 현재 일부 학교에서는 기숙사생들에게 <안전교육>, <공동체의식 함양교육>, <보건위생교육>, <폭력예방교육>, <성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권교육>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5 기숙사 인권 실태 조사 정례화

- 교육청 차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학생인권 실태 조사>와 연동하여 기숙사 운영 학교의 <기숙사 인권 실태>를 함께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기숙사 인권실태 조사 결과를 학교리더십 평가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6 인권실태 자체 조사 및 결과 공개

- 단위학교 차원에서 매년 기숙사 인권실태를 자체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학생들 입장에서 ‘학생인권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나 장치 필요성’을 제기하는 만큼 기숙사 인권실태 조사를 정례화 할 필요가 있음. 조사의 절차 및 준거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개발·제시할 필요가 있음

7 기숙사 운영 방침의 전환

- 현재의 기숙사 이미지는 ‘병영’과 ‘학원’ 이미지가 중첩되는 경향을 보임, **‘병영을 닮은 기숙사, 학원을 닮아가는 기숙사’** 이미지임. 이런 이미지는 입시실적을 강조하는 기숙사 운영 방침에서 비롯됨. 이런 기숙사에서 ‘삶과 학업의 균형’(Life- Study Balance)을 유지하기는 간단치 않음. 그리고 인권 보장 수준 또한 후진적 일 수밖에 없음. 따라서 기숙사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의 장(場)이자 민주주의 체험과 실천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이에 적합한 운영 시스템과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이런 점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기숙사정책 목표는 바로 ‘기숙사의 교육적 정상화, 운영 시스템의 민주화’에 둘 필요가 있음.